

56 I 인권 및 관련문제에 관한 앰네스티 공식문헌

가) 그 나라의 법조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규정과 특정시기에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나)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정된 경우.

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이 극히 제한되어, 위의 양심상의 근거나 확신 중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 거부사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라) 군에 징집된 후 깨달은 위의 양심상 또는 확신의 근거로부터 비롯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경우.

마) 군에 징집된 후 깨달은 양심상의 근거로부터 비롯된 이유로 군을 무단 이탈한 결과 투옥된 사람으로서, 이미 양심상의 근거로 군복무를 면제 받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민간통제로 시행되는 대체역무의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 대체역무의 기간이 다음 관련 항목의 가부 여하에 따라 형벌로 여겨질 소지가 있는 경우.

- 당국이 군 복무에 비교해 대체역무기간이 형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는지의 여부.

- 비형벌적 성격의 대체역무기간이 군복무보다 초과되는 이유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했는지의 여부.

- 기초 교육 또는 보충근무기간을 포함해서 대체역무에 소요된 기간이 군복무 전체기간보다 초과했는지의 여부.

3. 제 2조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법규정이 존재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의 사유를 결정당국에 진술하도록 국법이 요구하는 데도 진술을 거부했다면, 그 거부사유가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추측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양심수로 간주될 수 없다.⁹⁾

4. 순수한 민간성격의 민간통제로 시행되는 대체역무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사람은 양심수로 간주될 수 없다.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8 조를 참조하라.

Global NEWS

지난뉴스보기

ADVENTIST WEEKLY NEWS

2000.2.08



- ☐ 세션사 교습
- ☐ 세션사 학교
- ☐ 세션사 병위
- ☐ 세션사 명승곡
- ☐ 바이블랜드
- ☐ 뉴스피드 요약위
- ☐ 성경식물점
- ☐ 삼육위 언어학원
- ☐ 시조사



러시아법원이 양심적인 병역기피자들을 면제한다.

노보고라드, 러시아 ... [ANN]

한 러시아 법정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목사인 에두아르드 시미니우크 (Eduard Siminiuk) 씨에게 그 동안 “뜻 깊은” 판결로 묘사되어 온, 종교에 기초한 병역의 무 면제권을 부여하였다. 1월 26일 노보고라드 지방법원의 판결은 그 전부터 존재하였으나 거의 실시되지 않았던, 병역의무 대신 시민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양심적 기피자들을 위한 헌법적 권리를 확인하였다.

시미니우크 씨의 소송을 대변한 모스크바의 시민권 기구인 ‘법과 정의를 위한 슬라브족 센터’ (Slavic Centre for Law and Justice)인 SCLJ는 이번 판결이 러시아에서의 인권을 향한 한걸음 전진이라고 환영하였다. SCLJ 변호사인 블라디미르 랴코프스키 (Vladimir Ryakhovsky) 씨와 아나톨리 프첼린체프 (Anatoly Pchelintsev) 씨는 이번 판결이 “드문 경우로서 매우 우호적”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결과는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를 위해서 [법원들에게] 좋은 모범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였다.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군사징집을 회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는 양심의 자유와 함께 러시아 헌법 제 59조와 종교 협회법 (Religious Association law)에 잘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SCLJ의 정보담당인 타티아나 토마에바 (Tatiana Tomaeva) 씨에 의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론과 실재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양심적인 기피자들이 병역의무 대신 시민 봉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징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시미니우크 씨의 첫번째 소송은 1999년 가을 발다이 (Valdai) 시 법원에서 거절되었다. 그러나 노보고라드 배심원들은 하급 법원의 이 판결은 “비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신앙에 기초한 병역의무 면제에 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충돌한다고 언급하였다.

토마에바 씨는 이번 사례는 또한 비교적 빠르게 최종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뜻 깊다고 한다. 그녀는 “이런 많은 사례들은 법원에서 법원으로 옮기고 상급 법원에서 하급 법원에 조회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하고 “관료적 형식주의”와 “종종 빙빙 도는 상소과정”이 양심적 기피자들을 수년씩 걸려서 해결되는 법을 뒤흔어 걸리도록 한다고 말한다.

그 지역의 재림교회 종교자유지도자인 빅토르 크루세니츠키 (Victor Krushenitsky) 씨는 최근 많은 재림 교인들이 양심적인 기피자를 편드는 판결로 인하여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한다. 그는 1998년의 경우 16명의 자옥스키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툴라의 지방법원에 상소한 결과 면제 받았다고 한다.

재림교회 대총회의 공무 및 종교자유부장인 존 그라프 (John Graz) 박사는 시미니우크 판결을 환영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 그/그녀의 양심을 좇아야만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세계의 모든 정부에게 그들의 종교적 확신이나 강한 신념에 따라 총기를 잡을 수 없는 개인들을 인정하고 보호해주기를 강력히 권할 것”이라고 말한다.

[Bettina Krause]

Copyright Adventist News Network © 2000.

PISHON copyright 1996 by PISHON KOREA
E-mail : webmaster@3angels.com

한겨레21

THE HANKYOREH21

지난일

한겨레21 토론평

구독신청

HOT

2001. 2. 16

[제345호]

- ▶
- ▶
- ▶
- ▶ express
- ▶

[마이내리티]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

물려져왔던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그들이 갈 곳: 감옥뿐인가

검색

 go

기비스도리

특집

초전

경제

정치

진단

교육

다민

동일무

이슈추적

성역패기

반도그림

시시비비

풀뿌리동선

사랑과사회

마이내리티

움직이는 세계

아시아나드위크

과학

환경

문화

스포츠

프린트하기

기사둘러보기



사진/개인의 양심에 따라 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인가. 신병교육대 훈련 모습.(이정윤 기자)

자쫓빛 미결수복을 걸친 청년은 고개를 돌려 잠시 방청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응시한 뒤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천히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판사님과 검사님. 저는 여호와를 숭배하는 백성으로서 성서적 양심을 지키고자 입영을 하지 않고 자수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치타워협회 “1천명 이상 수감”

1월11일 정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된 스물두살의 청년 이낙근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짧은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은 5분 만에 끝났고 검사는 2년형을 구형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월18일 2년형이 선고되었다.

이씨처럼 종교적 양심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80년대 한때 정치적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90년대 이후 거의 사라지고, 현재 우리 사회에 남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집단은 이낙근씨 같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유일하다.

기독교계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시되는 현실이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의 옳고 그름은 관심 밖이다. 다만 총력안보가 절대선이 되고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압도했던 역사 속에서 의식적인 은폐(은, 무의식적인 외면이든 이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물려져 왔다.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시민으로서 이들에 대해 말문을 트자는 얘기다.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김두식 변호사는 “그들의 교리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그들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호와의 증인의 한국 지부인 ‘워치타워 성서책자 협회’(이하 워치타워협회)에 따르면, 90년대 매년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집총을 거부해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각 교도소에 수감된 인원은 1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워치타워협회는 “자체적으로 전국 30여개 교도소에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들을 집계한 결과”라며 신빙성을 주장한다. 반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는 서

로 책임 소재를 미루며 “공식통계가 없다”는 궁색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방 관계자는 “99년 통계로 현역군인 중 징총 거부자가 10여명”이라는 비현실적인 답변을 늘어놓았다.

1965년 이래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다. 대법원은 항상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다. 동국대 법학과 한상범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초실정법적인 양심의 자유와 실정법상의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치열한 논리적 검증없이 실정법만을 앞세워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다.

늦겨울 눈발이 안양교도소 담벼락에 흩날리던 2월2일 오후 3시. 담 너머 접견실로 푸른 수의의 청년이 들어왔다. 두꺼운 뿔테 안경을 낀 홍태규(23)씨 “사동 청소일을 마치고 오는 길”이라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유순한 인상은 달리 홍씨의 죄명은 군법상 ‘항명죄’. 지난해 6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홍씨는 징총을 거부해 항명죄로 군사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장호원 육군교도소를 거쳐 이곳에서 9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앞선 이낙근씨가 입영 거체를 거부한 예외적 경우인데 반해, 일단 입소 뒤 징총을 거부한 홍씨는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걷는 전형적인 길을 보여주는 예다.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95년 이후 항명죄의 법정최고형인 3년형을 선고받고 있다. 힘들겠다는 위로에 홍씨는 “후회는 없다”면서도 “군복무를 대신할 대체 봉사제도 마련돼 후배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친다.

대체 봉사제도 도입 논의할 때

사진/양심적 병역거부자 최준씨. 현역 중장이었던 아버지도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박승화 기자)



홍씨의 바람처럼 독일, 대만 등 많은 나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봉사제도가 마련돼 있다. 대체 봉사제도는 현역 복무를 대신해 말기환자 돌보기, 쓰레기 수거, 소방, 경찰 업무 등 공익적인 일을 맡아 하는 것이다. 대부분 나라에서 근무기간이 현역군인보다 더 길다. 서울대 법학과 한인섭 교수의 논문 ‘왜 소수자·약자의 인권인가’에 따르면 독일은 헌법에 양심상의 이유로 인한 징총거부권을 명시하고 있고, 미국도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 등을 거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왔다. 심지어 아랍권과 대치상황에 있는 이스라엘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선진국뿐 아니라 브라질, 수리남 등 제3세계 국가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유도 종교적 양심뿐 아니라 정치적 신념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분단국인 대만도 군병역을 감축하면서 지난해 9월 대체 봉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대만의 병역거부자들은 22개월의 현역 복무를 대신해 33개월 공익근무를 하게 됐다. 지난 한해 동안 여호와의 증인 27명과 승려 3명이 대체 봉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체 봉사제도의 도입이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된 적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환경을 이유로 들며 “아직 대체 봉사제도의 도입이 검토된 적 없다”고 잘라 말한다. 한편으로 “대체 봉사제도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군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

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워치타워협회 정운영 홍보팀장은 “대체 봉사자의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대체 봉사를 현역 복무 보다 더 힘들게 만들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군복무 기간 보다 더 길고, 더 힘든 대체 봉사를 기꺼이 감수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인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20대에 전과자가 되고, 그 낙인은 평생 걸림돌이 된다. 전과기록 탓에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의 병역거부자들은 취업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알음알음으로 들어가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형편이다. 공대를 졸업하고 학습지 영어교사를 하는 김형민(31)씨는 “병역거부를 결심하면서 학자의 꿈을 접어야 했다”며 “대체 봉사제가 도입돼 나같은 좌절을 겪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린다.

병역을 거부하는 당사자 못지 않게 가족들도 큰 괴로움을 겪는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최준(29)씨는 자신의 병역거부 때문에 현역 중장이었던 아버지가 군복을 벗은 경우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최씨는 94년 1월 방위병으로 입소했지만 집총을 거부했다. 최씨의 병역거부 사실은 곧 군수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아버지에게 전해졌다. 아버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만류했지만 최씨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결국 아버지는 예편해야 했고, 최씨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다. 최씨는 그때를 돌이키며 “내 양심 때문에 아버지가 피해를 입는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며 눈물을 글썽인다. 한 가족 내에서 형제들이 연이어 감옥생활을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 여호와의 증인 이금철(47)씨는 지난 설날 특사로 아들 강태희(22)씨가 석방돼 뭍 듯이 기뻐지만 아직 완전히 시름을 벗지 못했다. 지난 7월 병역거부로 수감된 둘째아들 태승(21)씨가 아직 교도소에 있는 탓이다. 이미 이씨는 90년대 초 병역거부자인 두 동생들 뒷바라지로 지쳐 있는 터였다. 이씨는 “동생과 아들이 감옥에 들어간 뒤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며 한숨을 내쉰다.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의 시름이 이렇게 깊음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아직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다. 동국대 법학과 한상범 교수는 이를 “내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의 간섭에 맞서 투쟁한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일제시대 댐 독립투사 대우?



사진/장호원에 위치한 육군교도소. 수많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곳을 거처갔다.(이용호 기자)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징병거부일 뿐이었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징병거부에 대한 평가는 달라져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참전을 거부해 수용소에 감금당하고, 대량학살되었다. 일제시대에도 여호와 증인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몇 안 되는 종교집단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군사정권 시절, 이들의 병역거부는 ‘이적 행위’ 의혹까지 받았다. 워치타워협회 정운영 홍보팀장은 “우리는 똑같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징병을 거부했을 뿐인데도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는 독립투사가 되고, 어떤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냐”고 쓴웃음을 짓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은 물리적으로는 군비축소로, 정신적으로는 관용으로 나 있는 듯하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

[Home](#) | [커버스토리](#) | [특집](#) | [진단](#) | [경제&경제인](#) | [초점](#) | [삶](#) | [과학](#) | [지구촌](#) | [문화](#) | [스포츠](#)

copyright(c)2000 The Internet Hankyoreh mail to [편집장](#), [webmaster](#)

[인터넷한겨레](#) [한겨레21](#) [씨네21](#) [DOT21](#) [DBDIC](#)

한겨레21

THE HANKYOREH21

지난호

한겨레21 토론향

구독신청

Hot

2001. 2. 21

[제347호]

- ▶ [이슈](#)
- ▶ [특집](#)
- ▶ [주제](#)
- ▶ [column](#)
- ▶ [express](#)
- ▶ [column](#)

[보도그뒤] “이 아이들, 감옥만 아니라면…”

집총거부로 고통받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애달픈 사연 쏟아져… 무
보다 기독교계 지지를

검색

go

기부스토리

특집

초전

경제

정치

전단

교육

다담

동일문

이슈추적

성역패기

보도그뒤

시시비비

풀뿌리통신

사람과사회

다이나믹리더

움직이는 세계

아시아네트워크

과학

환경

문화

스포츠

프린트하기

기사둘러보기



사진/지난해 6월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 성우 양지운씨. 몇분 만에 아들에게 3년형을 선고한 군사재판을 회상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녕하세요? 국방부입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다룬 <한겨레21> 제345호의 마이너리티 기사 ‘차마 총을 들 수가 없어요’가 나간 뒤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뜻밖에 국방부 관계자였다. 기사가 나간 다음날인 2월7일 오전,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 같다”며 “지난 한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이 10여명이라고 답한 것은 통계를 정확히 잡을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 통계의 사실 여부를 떠나 기사가 마감된 뒤에도 전화를 걸어 앞뒤를 다시 설명하는 그의 성실함이 놀라웠다. 그리고 ‘아직도’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현재 집총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1317명이다.

성우 양지운씨의 분노

같은 날부터 메일박스에는 매일 10통 가까운 전자메일이 쌓였다. 처음엔 ‘반쯤은 항의 메일이겠지…’라고 짐작했다. 막상 열어보니 짐작과는 달리 반박 메일은 거의 없었다.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는 반박 메일은 두통 정도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낸 몇통의 편지는 절절했다. 대기업에 합격했으나 병역 거부 탓에 입사를 취소당했다는 청년의 사연, 출감한 지 몇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밀실공포증에 시달린다는 편지, 남동생, 시동생, 사촌동생 두명이 한꺼번에 수감중이지만 슬프지만은 않다는 대학 영어강사의 얘기…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은 아니지만 기사를 읽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독자편지도 여럿 있었다. 노인부터 여중생까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낸 편지에는 “그동안 아무도 우리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탄식이 빠지지 않았다. 세상의 외면만큼 언론의 외면도 깊었던 것이다.

2월15일에는 성우 양지운(54)씨를 만났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내내 차분하던 그의 목소리도 아들의 군사 재판 과정을 회상할 때는 조금 높아졌다. 불과 40분 만에 아들을 비롯한 16명의 청년들에게 모두 3년형을 선고한 재판이었다. 양씨는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모범수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감옥만 아니라면, 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힘든 일을 맡겨도 잘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아직 묵묵부답이지만 사회의 반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인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소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시민운동이 할 일을 찾아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단체의 한 간부도 직접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이제야 첫 걸음을 땀 기분”

“기사를 읽고 ‘내가 과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갈 수 있을까?’를 자문하게 됐습니다. 글썩요... 확신을 못하겠더군요. 저는 종교적으로 여호와의 증인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이지만, 하루 속히 대체 봉사제가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의 증인 한국지부인 ‘워치타워 성서책자 협회’ 정운영 홍보팀장은 무엇보다 기독교계의 지지를 바란다. 정 실장은 “우리도 성서를 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며 ‘기독교계가 태도를 바꿔 이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내부적인 문제가 풀려야 바깥에도 뚝뚝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 문제가 하루이틀에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야 겨우 첫걸음을 땀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바란다”는 독자 편지 속에 담긴 당부대로 <한겨레21>은 긴 호흡으로 이 문제를 주시할 것이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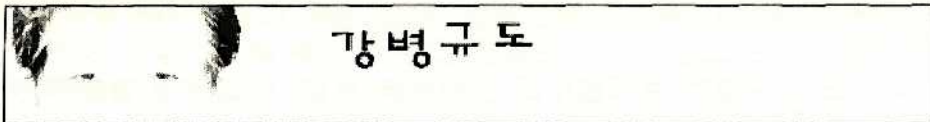
[Home](#) | [커버스토리](#) | [특집](#) | [진단](#) | [경제&경제인](#) | [초점](#) | [삶](#) | [과학](#) | [지구촌](#) | [문화](#) | [스포츠](#)

copyright(c)2000 The Internet Hankyoreh mail to [편집장](#), [webmaster](#)

[인터넷한겨레](#) | [한겨레21](#) | [씨네21](#) | [DOT21](#) | [DBDIC](#)

3월 18일 3:17 PM

한겨레21



강병규도

THE HANKYOREH21

지남도

한겨레21 토론평

구독신청

Home

2001. 3. 17 [제349호]

- ▶
- ▶
- ▶
- ▶ express
- ▶

[박노자의 북유럽 탐험] 양심의 권리가 더 신성하다

징집대상자 중 10%가 '대체봉사' 택하는 노르웨이, 그것조차 거부하는 '완전거부자'들도

검색 go

- 기비스토리
- 특집
- 초전
- 경제
- 정치
- 진단
- 교육
- 다담
- 동인물
- 이슈추적
- 심역재기
- 모도그림
- 시시비비
- 풀뿌리통신
- 사람과사회
- 마이나라터
- 윤적어는 세계
- 아시아나드림

서구적 근대성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보급'이나 '보편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통설이 된 지 오래다. 문자 보급과 고등 교육의 보편화, 유럽 특유 전염병들의 전세계적 보급과 설탕·담배의 유럽에서의 보편화, 참정권의 전례없는 확산과 정치운동들의 보편화... 그러나 국가 권력의 고도화와 강화, 그리고 '국민국가' 이념의 보급으로 인해서 보편화된 또 한 가지 현상은, 바로 국가의 합법화된 조직적 폭력, 즉 군복무였다.

'유럽적 민주주의'와 '병역거부권'은 동의어



사진/군대와 군사주의를 혐오하는 젊은 노르웨이 대중음악가의 연주회 포스터. 이 연주회의 입장료 전액을 감옥에 갇혀 있는 터키의 반(反)군복무 운동가의 지원 자금으로 쓰였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 소수의 귀족 장교와 천민 취급을 받는 평민 졸병의 몫이었던 군복무는, 19세기에 와서 일체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탈바꿈하였다. 국민개병제도의 확산에, 1816년부터 군복무를 의무화시킨 노르웨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별다른 전쟁을 하지 않았던 스웨덴과 합방돼 있었던 노르

과학
환경
문화
스포츠

웨이는, 징병제를 상당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실시할 여유를 가졌다. 자연 여건이 어려운 북부지역의 주민 전원이 면제되고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면제나 갖가지 특혜를 받은데다, 실제 복무에는 예비병기로 선발되는 소수의 인원만이 들어갔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체제는, 유럽에서 군국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20세기 초까지 존재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식 국민개병제도의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성한 군복무의 의무'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많았다.

프린트하기
기사둘러보기

살생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신성하고, 팽창해 가는 국가가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유린한다고 믿었던 퀘이커(Quaker)와 같은 종교 소수자들은, 군복무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살생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은, 그리운 고향을 버려 미주로의 이민을 택하는 서러움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내면을 철저히 지켰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자본가들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국가를 위해 다른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의 피를 흘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반(反)군복무 운동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결국 예수와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노르웨이 땅에서 유럽적 근대성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인 '국가적 폭력의 보편화'가 어느 정도 견제되어, 민주적·인권적 근대의 모습이 지켜졌던 것이다.

노동당과 공산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1922년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허용해주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최초의 법안이 노르웨이 국회에서 채택됐다. 이 법안 채택의 배경에는, 국내 반(反)군복무 운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분발한 평화주의자들의 열띤 투쟁의 결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지에서 통과된, 대체봉사 관련 법률의 영향도 있었다. 사실 대체봉사제도를 가장 늦게 법적으로 인정한 프랑스(1963), 벨기에(1964), 스위스(1996)만 제외하고는, 이미 1920~30년대에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은, 유럽 대부분의 민주법치국가에서 보편화됐다. 사실 그때부터 병역거부권의 존재 여부는 민주 법치 수준의 주요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권에 문제가 많았던 동독마저도 1964년부터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민주국가'로서의 공인(公認)을 받아야 했던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문맥에서, 병역거부운동의 선봉에 섰던 유럽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초기의 소련도, 상당히 오랫동안(1939년까지) 적어도 법률상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권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1920~30년대부터 노르웨이를 포함한 대다수의 유럽 민주국가에서 '유럽적 민주주의'와 '병역거부권 인정'은 동의어로 통하기 시작했던 것

이다.

전쟁중에도 병역거부권 쟁취투쟁

사진/노르웨이의 '군' 완전거부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미래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국가와의 정면충돌을 선택한 그들의 강목 체험담과 법률조 건을 만날 수 있다.



현재로서, 통계상 1년에 징집되는 젊은이들의 약 10%는 16개월(정상적 병역 기간의 거의 2배)의 대체복무를 택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봐서 대학생 중 거부사자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

복무의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중·고등학교에 학생간의 싸움을 방지하는 상요원으로 파견되어 자신의 반(反)폭력적 신념을 실천적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좌익계 거부자들이 아동구조·대외원조 기구에 취직하여 세계적 불평등 구조를 조금이나마 고치려는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와의 이와 같은 타협까지도 뿌리치고 '완전거부'의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1년에 100~200명이나 된다. 자신의 신념과 어울리는 복무까지도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말을 한국에서 하면 '배부른 사람들의 장난'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전거부자'(total objector)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보면 일리가 상당히 있어보인다. 그들은 병역의 근거인 국가의 '국민 동원권' 자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기간의 군복무나 대체봉사를 강요한다는 것은, 고대 유럽에서 노예주가 노예를 부리거나 중세 동양사회에서 전제군주가 백성을 토목 공사에 징집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반(反)민주적이고 반(反)인륜적인 폭력이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폭력과 타협해서 편안한 대체봉사의 길로 간다는 것은, 폭력의 공범(共犯)이 되는 수치와 다를 것이 없다. "힘에 굴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란 말은 그들의 표어다. 그러면 국가의 힘에 굴종하지 않는 대가는 보통 무엇인가?

1993년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완전거부자'는 90일의 구류를 당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180일간의 구류도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전과자가 된

그들은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출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국가와의 정면 충돌을 선택한 그들의 감옥 체험담과 법률 조언들을, '완전거부자' 협회의 공식 웹사이트

(<http://pluto.wit.no/doogie/ga/huset/kmv/>)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신념을 같은 평화주의자 사이에서도 일종의 극단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운동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노르웨이 진보운동 전체에 대단히 다행이라고 노르웨이인들은 생각한다. 타협과 안주를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최근에 대체복무제도의 장기적인 정상 운영으로 만족과 침체에 빠진, 노르웨이의 반전(反戰) 반(反)폭력 운동의 생명과 활력이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최초의 대체복무법(1916년)을 쟁취한 영국의 평화주의자들은, 냉전도 아닌 열전(제1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군복무를 거부하여 영창에 끌려가곤 하였다. 지금도 그리스와의 대치 속에서 쿠르드족과의 사실상의 교전 상황에 있는 터키에서는, 일부의 사회주의자·무정부주의자들이 군복무를 거부해 재판받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도 대체복사법이 없는 터키에서 이 법이 채택된다면, 지금과 같은 '전쟁 속의 병역거부운동'의 결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사적 파시즘이 이미 일상화된 군국주의 국가 이스라엘에서도, 아랍권과의 끝나지 않는 대치 속에서도 극소수 양심 분자의 병역 거부 투쟁은 끈질기게 지속된다. 그 결과로, 대체복사제도가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국가간의 대치 상황이나 전쟁은 대체근무제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제도의 쟁취를 위한 투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한국에는 왜 아직도 없는가

사진/터키에서 활동하는 노르웨이 공군 부대. 노르웨이에선 1922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으로 보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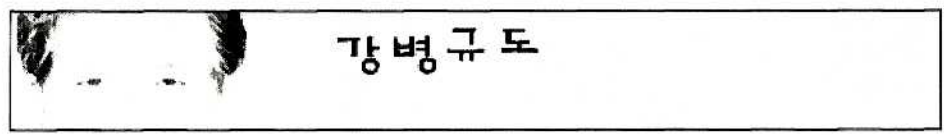


그러면 한국에는 아직 대체복사제도가 없는데,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진보진영에서조차 희미한 근본적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보통 이와 같은 질문을 한국 지식인에게 하면 '전통적인 국가주의'를 탓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통 시대의 말기에 조선 천주교 신도들이 세계

사에서 보기 드문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여, 양심의 자유를 위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던가? 개인의 양심과 신념보다 '국가적 필요성'이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군사적 광기가 짙었던 일제 말기의 '국민 총동원' 시기다. 태평양전쟁 시기의 군국주의적·국수주의적 세뇌의 장치들을 남·북한의 정권이 각각 그대로 이어받아 "국가를 위한 살생도 종교적·도덕적 죄"라는 단순한 논리조차 생기지도 못하게 국가와 군대를 이전의 일본 천황과 같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만들어놓았다. 지금 한국의 반(反)군복무 운동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남북의 분단과 대치 자체라기보다는, 남·북한 정권의 많은 공통점 중의 하나인 일제식 세뇌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르웨이 반(反)군복무 운동의 '쌍두마차'를 이룬 것은, 예수의 살생 금지를 실천하려는 일부의 기독교인과, 계급 국가를 불복종하려는 일부의 좌파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극우 반공체제 상황에서 좌파 운동이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받았고, 대부분의 주류 종교 집단들은 일제시대의 전례대로 국가와의 전면적인 타협을 하거나, 혹독재국가와의 충돌을 한다 해도 '신성불가침' 안보·병역의 영역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각종의 터부들이 점차 무너져가고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세뇌의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양심과 엇갈리는 국가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달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많아질 것이다.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 교수·한국학



[Home](#) | [커버스토리](#) | [특집](#) | [진단](#) | [경제&경제인](#) | [초점](#) | [삶](#) | [과학](#) | [지구촌](#) | [문화](#) | [스포츠](#)

copyright(c)2000 The Internet Hankyoreh mail to [편집장](#), [webmaster](#)

한겨레21

Total e-mail Marketing Agency

THE HANKYOREH21

지난호

한겨레21 토론방

구독신청

HOT

2001. 3. 20 [제351호]

- ▶ [이슈추적](#)
- ▶ [특집](#)
- ▶ [주최](#)
- ▶ [경제](#)
- ▶ [정치](#)
- ▶ [건강](#)
- ▶ [교육](#)
- ▶ [다큐](#)
- ▶ [동영상](#)
- ▶ [이슈추적](#)
- ▶ [상업패키지](#)
- ▶ [보도자료](#)
- ▶ [시사캐피탈](#)
- ▶ [플루리마켓](#)
- ▶ [사람과사회](#)
- ▶ [마이니트리](#)
- ▶ [움직이는 세계](#)
- ▶ [아시아나드워킹](#)
- ▶ [과학](#)
- ▶ [환경](#)
- ▶ [문화](#)
- ▶ [스포츠](#)

[특별기획] “세계의 양심은 하나”

인터뷰/ 콜롬비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 리카르도 핀존

징집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백'... 거부하다 마약조직으로 몰리기도

검색

 go

기부스토리

특집

주최

경제

정치

건강

교육

다큐

동영상

이슈추적

상업패키지

보도자료

시사캐피탈

플루리마켓

사람과사회

마이니트리

움직이는 세계

아시아나드워킹

과학

환경

문화

스포츠



콜롬비아에서 지구를 돌아 반 바퀴 돌아 서울까지 아온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 리카르도 핀존(Ricardo Pinzon). 지난 3월15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그는 지친 기색없이 열정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그는 20대 중반 기독교 메노나이트파 신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뛰어들었다.

-콜롬비아 상황은 어떤가.

18살이 되면 징집을 실시한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년, 그 이하 학력이면 18~24개월 동안 복무해야 한다. 징집여부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면제된 사람들은 15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빈곤층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결국 빈곤층은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촌 출신, 흑인, 원주민 등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지켜주는 셈이다.

-적대국이 없는데, 주적은 누구인가.

마약조직 같은 무장한 민간조직이다. 만약 병역을 거부하면 이들에 대한 혐의자로 몰리기 십상이다.

-양심적 징집거부자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레미소스(remisos)라고 불리는 이들의 숫자는 수천명에 이른다. 가톨릭의 몇몇 교파들, 메노나이트파, 여호와의 증인, 사회·정치적 이유의 병역거부자들이다. 공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 투옥되고, 대학에 진학할 수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도 없다.

-콜롬비아의 병역거부운동 상황은.

90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모임(Colectivo por la objecion conciencia)이 결성됐다. 종교적, 정치적, 환경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모두 속해 있다.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소그룹을 조직해 교육하는 활동을 주로 하며 공공기관을 점거하는 비폭력 직접행동도 감행한다.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프린트하기

기사둘러보기

정부의 탄압도 문제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징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
분위기였다. 그 벽을 깨기가 가장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운동의
성가로 국회에 열일곱번 대체복무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라틴아메리카 전체적 상황은.

90년대 들어 파라과이와 브라질에 대체복무법안이 만들어졌다. 이들 나라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93년부터 중남미 병역거부운동 단체들의 네트워크
크가 생겼고, 1~2년마다 모여 회의를 갖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평화를 실천하는 행동이다. 결코 비겁한 행동이 아니며 고
난을 감수하는 용감한 실천이다. 한국이나 콜롬비아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의 양심은 하나다.

Total e-mail Marketing Agency



[Home](#) | [커버스토리](#) | [특집](#) | [진단](#) | [경제&경제인](#) | [초점](#) | [삶](#) | [과학](#) | [지구촌](#) | [문화](#) | [스포츠](#)

copyright(c)2000 The Internet Hankyoreh mail to [편집장](#), [webmaster](#)

[인터넷한겨레](#) | [한겨레21](#) | [씨네21](#) | [DOT21](#) | [DBDIC](#)

[특별기획]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아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대만, 그 현장을 가다



사진/타이중의 런아이즈이자 양모원에서 회단을 가꾸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종교적 양심을 인정하는 대체복무법안의 통과로 더이상 감옥에 갈 필요가 없게 됐다.

“대체복무제는 절대 안 된다.” 1997년 대만의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단언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인 2000년 1월 ‘분단국가’인 대만의 입법원(국회)은 대체복무법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에 이르러서야 계엄령이 해제되고, 90년대 중반까지 2천여만명의 인구로 남한에 조금 못 미치는 60만명의 병력을 유지할 정도로 대만은 ‘병영국가’였다. 그리고 여전히 군대 내 자살률이 사회의 3~5배에 이르고 군 의문사도 발생한다. 그런데도 대체복무제가 시행된 것이다.

96년부터 대체복무제의 입법을 위해 노력해온 치엔시치에(簡錫皆)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처음에는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빠른 도입에 나조차 놀랐다”고 말한다.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의해 대만 젊은이들은 병역과 공익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리고 서른한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감옥 속에 갇히는 대신 사회 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었다.

지정종 3형제의 17년 감옥생활

3월 9일 오후 1시, 타이베이(臺北)를 출발해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 남짓 내달리자 타이중(臺中)에 다달았다. 도심의 단조로운 회색건물들 사이를 지나 멀리 야트막한 산들이 보일 무렵, 타이중 시립 런아이즈지아(仁愛之家)라는 붉은 색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양로원이다. 정문에 들어서자 땀에 젖은 반팔 T셔츠를 입은 건장한 청년 한명이 차를 향해 달려온다. 정문 옆 화단을 가꾸던 가오즈청(24·高智誠)이다. 화단에서는 서너명의 청년들이 여전히 삽을 들고 땅을 고르고 있다. 이 양로원에서 조경반으로 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다.

가오즈청은 지난해까지 감옥에 묶인 몸이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던 탓이다. 98년 입대해 2년을 감옥에서 보낸 그는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서 겨우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다.

대체복무제가 입법되기 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만의 처벌은 가혹했다. 7년형 이상 선고를 받고 4년 이상 수감생활을 해야 군입대가 면제됐다. 그나마 형량이 누적되지 않아 연속된 수감기간이 4년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45살이 될 때까지 되풀이해 감옥에 끌려가야 했다. 고의적으로 형기 4년을 눈앞에 두고 석방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형편이다보니 최고 15년까지 감옥생활을 한 사람도 있다. 여호와의 증인인 가오즈청의 아버지도 20대 청춘을 내내 감옥에서 보냈다. 신앙이 곧 감옥행이 되는 이런 가족사는 비단 가오 집안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타이베이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지정쥬(42·姬正中) 3 형제는 모두 병역거부로 감옥생활을 했다. 이들 형제가 치른 감옥생활을 합하면 무려 17년. 76년에 입대한 형은 항명죄로 11년형을 선고받아 7년을 감옥에서 보냈고, 형이 채 형기를 마치기도 전인 80년부터 지정쥬도 같은 이유로 6년 동안 투옥되었다. 80년에서 83년까지 3년 동안은 두 형제가 동시에 갇혀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어머니는 타이베이에 수감된 큰아들과 타이난(臺南)에 수감된 둘째아들을 면회다니느라 일주일에 두번씩 타이완 섬 양 끝을 오가며 눈물을 뿌려야 했다. 86년 둘째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번엔 막내가 수감되었다. 4년의 옥고를 치른 막내가 91년 출감하고서야 이들 가족은 감옥과 멀어졌다. 지정쥬는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적도 많았다”며 “더구나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던 탓에 가족들의 마음고생은 더욱 심했다”고 돌이킨다. 형이 수감된 지 얼마 뒤 아버지는 군생활을 접었다.

병력감축, 절호의 기회를 잡아라

92년 항명죄의 최고형이 7년에서 5년으로 낮아졌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 7년형 이상을 선고받고 4년 이상을 복역해야 군이 면제되는 법은 그대로인 채 선고되는 형량만 낮아져 군문제 해결이 더욱 난망해진 것이다. 타이난에 살던 커장원(32·柯掌文)은 89년 7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생활을 하던 중 91년 1월 1일 타이완 건국 기념일에 특사로 풀려났다. 하지만 그에게 출감은 전혀 달갑지 않았다. 4년형을 채우지 못해 다시 투옥될 형편이었던 탓이다. 더구나 재판을 기다리던 92년 항명죄의 최고형이 5년으로 낮아져 더욱 난감했다. 92년 다시 재판을 받은 커는 군법무관에게 “제발 다른 죄명을 붙여서라도 7년형을 받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결국 법무관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그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 4년형을 딱 채운 96년 5월 비로소 그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가혹한 처벌을 받았지만 대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는 반세기 동안 늘 감춰져 있었다.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이 8만명인데 비해 대만은 4천명에 지나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국의 위협을 빌미로 한 안보론이 사회를 휘어잡고 있었던 탓이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는 90년대 후반 병력감축이 논의되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다. 97년 45만명의 병력을 40만명으로 줄이는 감군 계획에 따라 매년 14만~15만명에 달하던 징집인원이 2000년부터 13만명선으로 줄어든 것이다.

징집대상 인원이 넘치다보니 징집대상자들은 입대를 하려면 6개월~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던 세력에는 절호의 기회였다. 장애인, 여성, 노인단체 등 대체복무의 혜택이 돌아가는 민간단체들은 사회역(대체복무)민간단체추진연맹을 결성했고, 치엔 위원 등 56명의 입법위원들은 ‘초당파 사회역 추진팀’을 구성했다. 젊은이들도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97년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내정부(행정자치부) 징집국에 부임한 총타이리(鍾台利) 국장을 중심으로 초과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관료들의 유럽의 대체복무제 시찰은 ‘행정원대체역 추진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유럽의 대체복무제는 원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만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가 부각되게 되었다. 때마침 법조계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제기했다. 리니엔추(李念組) 변호사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위헌소송을 낸 것이다. 리 변호사는 “92년 법개정 이후 오히려 더 자주 투옥되고, 모범수로 가석방되는 것이 본인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상황은 법의 모순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였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한다.

전통적 안보위기론을 돌파하다

논의가 공개화된 98년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은 급류를 탔다. 우선 15년의 군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국민당의 장치윈(江綺雯) 입법위원, 민진당의 치엔시치에(簡錫皆) 입법위원 등 정치인들이 수십 차례 공청회를 열어 초당적 입법활동에 나섰다. 침묵하던 지식인들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지적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글을 각종 매체에 기고하기 시작했다. 국가정책연구기금회의 첸신민(陳新民) 교수 등 유럽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자들의 활동이 도드라졌다. 첸 교수는 특히 대체복무제의 도입이 인권존중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과인력 1만명이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대체복무하게 되면 복지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고, 이들의 낮은 임금을 감안할 때 얼마만큼의 국가예산이 절약되는지를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가며 설득했다.

물론 군내부의 반발과 여론의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먼저 중국의 위협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안보위기론이었다. 중국의 위협이 여전한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국방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였다. 장 입법위원 등은 “군인 수로 국방력을 과시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무력보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치엔 입법위원도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통해 복지제도를 튼튼히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안보”라는 논리로 거들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인정은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도화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군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염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십년 동안 증명된 바와 같이 이들을 감옥에 넣는다고 병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을 길게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또 국제 인권기준에 걸맞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국가위상이 올라갈 것이란 점도 강조되었다.

여론이 우호적으로 흐르자 1999년 장 위원과 치엔 위원 등 초당파사회역추진팀의 50여명 의원들은 대체복무법안의 발의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국방위원회 소속 21명 의원이 전원 동의해 입법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결국 2000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대체복무는 크게 경찰, 소방업무 등 사회치안분야와 의료서비스, 환경보호, 교육봉사 등 사회봉사분야로 나뉜다. 일이 험해 일손이 모자라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대체복무의 주영역인 셈이다. 대체복무법안과 더불어 군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하는 법도 동시에 통과되었다.

예상 밖으로 컷해 신청자 모자라



사진/재벌 6사에 일어나야 하고, 노인에게 전염병을 옮기기도 하며, 때로는 심야에 아픈 노인을 들쳐 업고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등 고된 하루 일과지만 이들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양로원 관리자도 “이들이 온 뒤 양로원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칭찬한다.

→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인 2000년 12월 4일 세계인권 날에 첸수이볜 총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투옥돼 있던 6명과 가석방중이던 13명을 특별사면했다. 이들 중 3년 미만 형을 산 7명은 남은 형기를 살거나 다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지만, 2년 4개월의 형을 이미 마친 사람조차 기꺼이 33개월의 대체복무를 받아들였다. 워치타워협회 관계자는 “국민당 정부는 대체복무법을 통과시켜 미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하고, 민진당은 특별사면을 통해 과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할 셈”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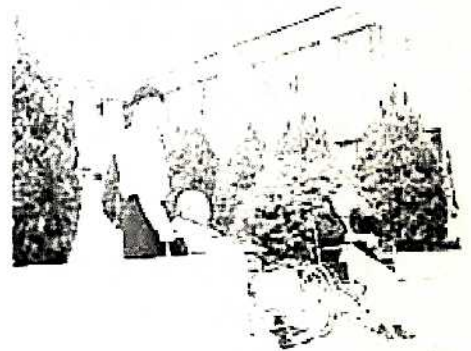
통과된 대체복무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먼저 일반적인 대체복무자이다. 대만의 징집대상자는 일단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 대체복무자, 면제자로 나뉜다.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한마디로 ‘선택권’을 준 것이다. 단, 신청자가 필요인원을 넘어서는 경우 추첨을 통해 대체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복무 기간은 맡은 업무에 따라 현역보다 4~6개월 더 길다. 지난해 5월과 9월에 걸쳐 5천명씩을 모집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시행 첫해에는 신청자가 모자랐다. 관계자들은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쉽지 않다는 인식이 강한 탓”이라고

분석한다.

일반 대체복무자들이 4주 군사훈련을 받고 각 기관으로 배치되는 데 반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2주 기초교육과 2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뒤 각 기관으로 배치된다. 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대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인 33개월이다. 심사제도도 엄격하다. 일단 양심상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유서와 회고록을 쓴 뒤 종교단체의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워치타워협회 대만지부는 “일단 각 지역의 원로들이 엄격한 자격심사를 한 뒤 대만지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내정부 징집국의 심사위원회가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다. 대체복무법안은 시행조례에서 대상을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자로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양심상의 이유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3번의 경고를 받으면 대체복무가 취소된다.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종교적 양심상의 이유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31명에 불과하다. 28명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나머지 3명은 승려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31명은 모두 타이중에서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이들 중 14명은 98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지진재해복구지원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가오즈청처럼 런아이즈지아(仁愛之家) 양로원에서 일하고 있다.

불교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

서서히 으스름이 깔리던 3월 9일 오후 5시 30분. 양로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또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주앙신승(22·莊信雄)이 설거지 거리를 가득 실은 카트를 밀고 있었다. 양로원의 이른 저녁식사 준비와 배식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양로원에서 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7명 중 주앙과 첸난평(28·陳南邦)은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한다. 식사를 담당하는 주앙은 아침 6시면 일어나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첸은 혼자서 32명의 노인을 돌보며 목욕에서 편지쓰기, 건강까지 일일이 체크해야 한다. 9월부터 이 일을 시작한 두 사람의 손은 벌써 노인에게서 전염된 피부병으로 울긋불긋했다. 마중을 나왔던 가오즈청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은 조경반이다. 이들은 8천평에 이르는 양로원 화단을 가꾸고 다듬는 일을 담당한다. 이날 이들은 하루종일 정문 담장 옆 화단의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는 일을 했다. 아열대기후의 퇴약별 아래서 일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로 2년 동안 감옥을 다녀온 가오는 “양심도 지킬 수 있고 사회에 공헌도 하는 사회봉사가 감옥보다 훨씬 낫다”며 웃는다.



사무실에서 만난 양로원 관리자 허릉송(何榮松) 주임은 열심히 대체복무제도를 ‘찬양’한다. “그동안 일손이 너무 부족해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산책을 시켜줄 여유도 없었어요. 대체복무자들이 온 뒤 그런 일들이 수월해졌지요. 양로원 분위기마저 평화로워졌을 정돕니다. 저희 양로원에서는 20여명의 대체복무자들이 다들 열심히지만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일곱명이 성실합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왜 이제야 시작했나 싶어요.”

어둠이 점점 짙어지자 런아이즈지아 양로원 숙소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온 승려 홍미엔칭(21·洪敏淸)도 있었다. 하루 동안 10명의 독거노인을 돌보고 오는 길이라는 그는 합장으로 손님을 맞았다. 그는 “살생불계의 불교교리를 지키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며 대체복무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타이중에는 각각 가오슝(高雄), 신주(新竹), 타이베이에서 온 승려 세명이 종교상 이유로 33개월의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서로 종단도 다르고 얼굴도 몰랐던 이들은 정부의 공고를 보고 대체복무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홍은 “만약 대체복무제가 없었다면 입대를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면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것 같다”고 고백한다. 입대를 앞둔 홍 주변의 몇몇 승려들은 대체복무를 선택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위가 고요한 어둠뿐인 타이중의 양로원을 뒤로 하고 나오며 치엔 입법위원의 말이 떠올랐다.

“대만은 40만 병력으로 280만의 중국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요하며 기회만 있으면 대만에 으름장을 놓지요. 얼마 전 대만의 국방장관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데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무력으로 땅을 점령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비폭력적인 대체복무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애정, 세계평화를 배우게 됩니다. 대체복무가 사회복지와 평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지요. 한국도 병력 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대체복무 도입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체복무제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가가 된 대만.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군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실현된 현실 사이에는 가끔 거리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도 어찌면 그런 문제인지 모른다. 정작 문제는 반세기 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아 온 허울뿐인 형평성, 끝내 지우지 못하는 불안감인지도 모른다. 한결같이 “대체복무제도가 생기지 않았으면 감옥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대만 대체복무자들의 웃음 면 얼굴 위로 감옥에 갇힌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모습이 겹쳐져 왔다.

타이베이=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디지털 말
~~위장~~ (2001. 3. 24)

김승국-한반도의 군축과 평화

뜨거워지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징집제 논쟁으로 비화될까

(김 승국 기자/skkim@digitalmal.com) 디지털 말.

인터넷상에 '자살 사이트'와 '폭탄 사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까지 등장, 충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연합뉴스 3.22)를 읽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이미 폐쇄된 뒤였다. 경찰이 밝힌 대로 이들 사이트가 병역거부를 얼마나 선동했는지 확인하지 못했으나, 기사를 쓴 기자의 관점과 경찰의 발빠른 수사·사이트 폐쇄 조치는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병역제에 이의제기 하는 사이트를 자살 사이트나 폭탄 사이트와 같이 취급하는 기자의 의식과 이단자로 단정하고 박멸하려는 경찰의 대응이 한 뿌리임을 알 수 있다. 징집제 신화에 도전하는 자들을 이단자로 모는 데 경찰과 기자가 합세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기자는 징집제를 수호하려는 국방 당국을 이심전심으로 대변하고 있다. 징집제에 토를 다는 자들은 감옥행이나 사회로부터 '왕따'당할 것을 각오하라는 경고장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관한 위헌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여호와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예워싼 논란이 진행중이다. 군 교도소행을 결행하는 여호와와 증인들은 군 체제의 이단자들이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와 병역의무가 어긋나는 한복판에 서있다.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징집을 거부한다. 현재의 분단상황에서 이웃은 북녘 땅의 군인이다. 여호와가 보기에 북한의 군인도 이웃이며 형제인데 그들을 향하여 총부리를 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은 '동족을 향해 총구를 겨눌 수 없다'고 병영입소를 거부한 80년대의 학생들이나 양심선언 군인들의 행태와 비슷하다. 다만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냐 민족적 양심에 따른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두 부류 모두 분단의 희생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한 여호와 증인은 분단의 희생양

분단은 전쟁체제·사회의 군사화를 강요했다. 남북 대결 아래에서 국방의 신성함에 도전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여호와 증인의 징집거부를 이적행위로 쉽게 단정하는 고정관념이 형성된다. 이 고정관념 역시 분단이 낳은 산물이며 여호와와 증인들이 개인의 양심과 무관하게 분단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호와와 증인들은 이웃을 내뿜처럼 사

랑하라는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어떤 적대적인 싸움에도 개입하지 않고 철저히 중립을 지킨다고 한다. 이렇게 중립을 지키는 행위가 집총거부로 나타난다. 그런데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가 득세하는 분단의 현실에서는 나와 적 사이에 중립지대란 없으며 여호와와 증인들이 설 땅이 없다.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와 증인들이 희생양으로 바쳐진다.

우리와 똑같은 분단국가이었던 서독은 동독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도 1949년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에 보장했다. 분단의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대만도 지난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이 두 사례는 분단 상황에서도 병역거부에 대한 관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혹시 한국군의 집단적 사고유형인 반공주의의 그늘에 가려 관용을 베풀 수 없는지도 모른다.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

최근 징병제를 에워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은 수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 대체 군대란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폭력장치라고 규정되는 군대가 시민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군대가 제공하는 '힘에 의한 평화'란 가능한가. 이 힘에 의한 평화와 집총 거부하는 여호와 증인의 평화관은 어떻게 다른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개인의 양심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다. 국방의 신성함과 신앙의 자유의 신성함이 어긋날 때 시민 개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하나. 이 때 시민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인간 안보'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국가권력 중심의 안보관이 시민사회에 평화를 가져다주나.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 군 당국과 북한을 이웃으로 감싸 안아야한다는 논리의 상충이 개인의 희생(여호와 증인의 교도소행)으로 마감되어야하나. 여호와교를 이단시하는 기독교계 일부의 호국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군 복무를 신성시하는 잠재의식에 남성 우월의 가부장적인 상무정신이 있지 않나. 여호와 증인과 같은 소수자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군 집단의 집체주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국가권력의 수호'라는 거대담론과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미세담론이 엇갈릴 때 어느 쪽에 무게를 두어야하나. 공공재로서의 국방이 시민 개개인의 인권을 억누를 때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

네티즌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시민의식의 성장을 대변한다. 냉전 의식에 짓눌려온 기성세대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네티즌들은 병역문제에 개방적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결단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이는 여호와와 증인들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란 자체가 시민사회의 성숙이며 군 당국의 유연한 사고를 요구한다. 군 당국은 이러한 시민의식의 성장에 주목하여 징병제 운용의 탄력을 모색하여야할 것이다.

군 당국은 징병제 운용의 탄력 모색하길

네티즌들은 ‘군대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군대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상 전환은 모병제를 대안으로 떠올린다. 병역기피는 가볍게 처벌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냉혹하게 다루는 불균형이 네티즌들로 하여금 징병제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누구는 군대에 끌려가고 누구는 범망을 피해 병역을 면제받는 부조리가 ‘꼭 군대에 가야하나’는 질문을 낳게 한다. 군 입대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모병제 선호로 이어지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진 것 같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탄력적인 발상에 걸맞는 병역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군 당국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징병제를 제시해야할 것이다. 자유분방한 젊은 세대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 청춘의 낭비라는 것이다. 군 당국은 젊은이들이 군 입대를 꺼리는 의식의 흐름을 간파해야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동되는 사회 저변의 움직임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여기에서 지원병 제도를 확대하는 등 징집제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참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군이라면 군비축소나 감군에 대비해야하고 감군의 일환으로 모병제를 상정해야할 것이다. 모병제는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될 관문이다.

젊은이들에게 군 입대는 실존의 문제이다. 여호와의 증인과 달리 실존의 결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할 젊은이들이 나올 수 있다. 이들을 또 다시 ‘아웃 사이더’로 만들지 않기 위한 병역제도를 정비해야할 것이다

병역거부기사모음

한겨레신문 42001. 4. 10

'여호와의 증인'에게 /서준식

그러니까 딱 30년 전이었다. 스물네 살 나이에 기약도 없는 옥살이를 예약해 놓고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간 나는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다.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와 있던 그는 매일 약상자를 들고 의무과 교도관과 함께 미결사동을 방문하는 '간병부'였다. 틀림없이 나에게 씌워진 어마어마한 '죄명'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박해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 자신의 슬픔 때문에 나를 보는 그의 눈이 때로는 차갑고 때로는 따뜻했다. 나와 비슷한 연배의 곱상하게 생긴 그의 이름을 나는 '김중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형.

그동안 잘 지냈는지요? 얼마 전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보다가 갑자기 기억의 아스라한 밑바닥에서 당신이 떠올라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다룬 그 르포의 주인공은 김세정씨라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병역거부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는 아들 둘을 교도소에 두고 있었고, 셋째 아들의 감옥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클로즈업된 김세정씨 얼굴을 보면서 문득 그만한 연배가 됐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아들 하나쯤 교도소에 보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상념으로 저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30개 교도소에서 1600명이나 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햇빛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온갖 미신에 사로잡힌 집단 히스테리가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어떠한 평화운동도 반전운동도 성장하기 어려웠던 우리 사회에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고난으로 열린 시대입니다.

생각하면 당신이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고생하던 그 시절에 이미 동·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널리 법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드는 법률이란 결코 '신성한 것'이 아니라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 민주주의는 그 국민에게 제도와 법률, 그리고 습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믿음을 지닌 수많은 사람들이 겪은 고난의 성과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998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호원칙은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준수해야 할 국제법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의 오랜 감옥생활 기간을 통해 꾸준히 저를 도와준 국제사면위원회의 한 회원을 만났습니다. 젊어서 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졌다는 그 노인은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장 극악한 파괴행위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져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젊어서 옥살이를 했었지" 하면서 빙그레 웃는 그 노인을 알고보니 2차대전 때 병역거부로 두 달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와의 모든 협력을 거부하면서 투옥된 3500명 가량의 '절대적 병역거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노인도 그 중 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지금 빛 바랜 흑백사진을 꺼내 보듯이 당신이 가졌던 맑은 표정을 생각합니다. 그 표정에 영국에서 만났던 노인의 선량한 표정이 겹쳐옵니다. 당신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로지 신앙에서 나왔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류가 살아온 시대마다 각자의 처지에서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고

민하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비폭력은 서서히 자라는 식물이다.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성장한다.”

부끄럽게도 30년 동안 잊고 지낸 당신의 고난을 이제야 생각하며 저는 이런 말을 실감해봅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의 감옥에서 고립무원했던 젊은 공안사범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따뜻한 시선을 보내준 그 유물론자, 폭력의 구조를 떠받치는 그 어떤 '범'도 어 기면서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어했던 그 '양심적 반전주의자'를 가끔은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한겨레 21 제352호

[사람과사회] '안티 징병제' 를 진압하라

경찰청 '군대반대·병역기피 사이트' 전면수사... 두곳 자진폐쇄 등 '토론 위축' 움직임
병역거부와 병역기피의 차이는 무엇인가? 징병제 토론과 병역거부 선동은 어느 선에서 갈리는가?
지난 3월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기피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3개에 대한 전면수사에 나 섰다” 고 밝히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병역기피 조장' 혐의로 지목한 3개 사이트는 지난 3월 아나키스트들이 개설한 '군대반대 사이트' (non-serviam.org), 다음 카페 의 '징병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징거모), 라이코스의 게시판 '존나깨는 병무청' 이다. 징병거부를 공공연히 선동?

징병제 관련 사이트 중 지난해 초, 가장 먼저 개설된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징반모 · www.anticonscrip.org)은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징반모는 이미 4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징병제 관련 사이트 중 가장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징반모는 징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병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토론 사이트” 라며 “이 정도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뇌물 액수와 정신과 치료, 습관성 탈골 등 구체적인 병역기피 방법을 알려줘 문제가 된 사이트는 '존나깨는 병무청' 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병역특례 취업정보를 알려주는 등 사실 병무상담의 성격이 강하고, 일부 게시된 병역기피 방법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어서 경찰도 수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상태다. 다음 카페의 징병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병역거부 선언' 메뉴를 만들어놓아 수사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병역거부 선언에는 단 한건의 선언글도 올라오지 않았을 뿐더러 회원도 너댓명에 불과하다. 경찰도 “이 두개의 사이트는 위법 혐의가 미미한 정도” 라며 “구체적으로 병역기피를 도와준 적이 있는지만 확인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수사의 초점을 '군대반대 사이트' 에 맞추고 있다. 언론에 의해 '병역기피 사이트' 로 뭉뚱그려 알려지기는 했지만 이 사이트를 특히 문제삼는 것은 군대반대 '운동' 을 선언했 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이트의 한 회원은 공개적으로 '군대가지 않겠다' 고 밝히며 병역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징병거부를 공공연히 선동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등 군대반대운동을 펼치기 위한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고 덧붙였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형법 114조의 '병역거부단체 조직 가입죄' 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이들을 추적 조사한다는 게 경찰쪽 입장이다. 20일 경찰의 수사방침이 발표된 뒤 이 사이트에는 하루 300여건의 글이 폭주했다. 이들에 대한 지지글부터 극단적인 반대글까지

징병제를 둘러싼 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수사 발표 당일이었던 20일, 경찰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라이코스 코리아에 사이트 운영자의 인적 사항과 IP주소를 요청했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도 폐쇄 요청을 한 상태다. 다음쪽은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운영자의 인적 사항과 IP주소를 넘겨줬다. 하지만 라이코스 코리아쪽은 “징병제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인터넷이 가져온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 폐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아직 심의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폐쇄 결정을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건 수사 발표 이틀 뒤인 22일, 다음 카페 ‘징거모’의 첫 화면에는 ‘본 카페는 2001년 3월22일부로 개설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카페가 폐쇄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같은 날 라이코스의 게시판 ‘존나깨는 병무청’의 모든 게시물이 삭제됐다.

법 적용 범위 둘러싼 논쟁 이어질 듯

두 사이트의 운영자는 이번주 수사에 응하기로 했지만, 3월26일 현재 ‘군대거부 사이트’ 운영자 두명은 아직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이트가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114조2항을 어긴 혐의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형법 114조2항 자체의 규정 범위가 모호해 오용될 소지가 큰 조항”이라고 전제한 뒤 “과연 이 사이트가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을 지녔는지,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경찰은 운영자뿐 아니라 가입회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군대거부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는 병역기피 방법을 사이트에 올린 적이 없다”며 “정치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밝힌다. 경찰이 주목한 오프라인 모임은 ‘군대반대 사이트’뿐 아니라 다른 징병제반대 사이트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가 속속 발표되었다.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등 8개 평화·인권단체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경찰의 수사방침이 최근 언론을 통해 징집제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보도가 나가고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점차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것이란 점에 주목한다”며 “징병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합리적 토론 및 사회공론화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다음날에는 진보네트워킹센터,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이 참여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의 성명이 이어졌다. 이 단체는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인터넷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징병제에 대해 단지 ‘논의’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인 범죄 운운하는 것은 인터넷에 대한 검열논리를 정당화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즉각 징병제 논의 사이트에 대한 전면수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네트워킹 장여경 정책실장은 “자살 사이트, 폭탄 사이트 소동에 이어 인터넷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한 세 번째 시나리오”라며 “지금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한다.

병역거부단체조직 가입죄 적용?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군대거부 사이트가 개설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큰 조직이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운동이 본격화했을 때 치를 사회적 비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징병제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최초의 병역거부단체조직 가입죄 적용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경찰은 군대반대 사이트가 ‘병역거부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군대거부 사이트 운영자쪽은 징병기피가 목적이 아님을 반박해야 할 상황이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앞으로 징병제의

토론 수위를 가능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징병제에 대한 토론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경찰의 수사방침은 벌써부터 토론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 '자진 폐쇄' 한 두 사이트가 이를 증명한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

한겨레 21 제 352호
[특별기고] “김훈련병 미안합니다”

집총거부자들에게 기계적으로 2년형을 선고했던 나의 군법무관 시절... 이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기로

10년 동안 잊고 지냈다. 최근 <한겨레21>에 실린 양심적 병역거부 기사를 보고 군법무관 제대 뒤 잊고 지내던 여호와의 증인들을 기억해냈다. 법무관 시절 징역 2년형을 주었던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었고, 평화주의자들이었다. 나는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선량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나는 군법무관으로 있을 때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형벌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바쁜 변호인 생활에 쫓겨 까맣게 잊고 지낸 것이다. 억울한 학생, 재야인사, 노동자들 변호는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같은 양심범인 이들을 나는 왜 잊고 있었을까?

선하고 맑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법무관으로 있었던 80년대에는 집총을 거부해 구속된 여호와의 증인들은 대개 가정형편이 어려웠다. 고등학교 졸업 뒤 육체노동을 하다 군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얼굴 표정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다. 법무관으로 논산훈련소에 근무할 때 서울의 명문대학에 재학중인 김아무개 훈련병이 나에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집총을 거부하는지를 조용히, 침착하게,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는 모든 사람이 총을 들지 않으면 남북한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듣고, 그에게 너의 뜻이 이 세상에서 관철될 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군사재판에서는 군판사인 군법무관 외에 일반 장교인 소령이나 중령도 심판관으로 재판에 관여한다. 그런데 김 훈련병 재판에서 나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령 한명이 심판관으로 참여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곧 심판관과 김 훈련병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심판관이 “왜 총을 받지 않느냐”고 묻자, 김 훈련병은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입각해 자기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심판관은 버럭 화를 내며 나무랐다. “너는 빨갱이다. 아니 빨갱이보다 더 나쁜 놈이다. 네가 밥 먹고 사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기 때문이다. 네가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다 그 덕이다.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다니,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그러자 그는 침착하게 다시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그 심판관은 더 크게 화를 내며 자기 주장을 반복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심판관의 말은 그 당시 군복무를 오래한 군인들의 일반적 생각이었다.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논쟁조차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일률적으로 의례적인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재판은 끝나버렸다. 일단 검찰관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가? 집총을 하고 군사훈련을 받으라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피고인이 “그렇다”고 짤막하게 대답한다. 다시 한번 군판사가 집총거부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간단히 최후진술을 하면 재판이 끝난다. 미래가 창창한 청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데 채 3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한번도 여호와의 증인을 위해 군법무관인 국선 변호인 말고 일반 변호사가 선임돼 이들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더구나 이들은 항소도 하지 않는다. 매년 20대 초반의 건장한 젊은이 500여명이 ‘정찰제’ 3년 징역형을 무저항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극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80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총 받기를 거부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하여 군형법 44조 항명죄 위반으로 그 당시 법정 최고형인 2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90년대 초부터 상관이 총을 두번 주어 두번 다 받기를 거절하면 경합범이라고 하여 최고형의 2분의 1을 더 늘려 3년형을 선고하였다. 먼저 여호와의 증인신자에게 군복을 지급할 때 총을 주고, 다음 날 훈련할 때 또 다시 총을 주어 거절하면 두번 거부로 간주해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해피한 법 적용이었다. 어차피 총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두번 총을 준다고 한번은 받고, 한번은 안받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

“두번 거부하면 3년형” 해피한 법 적용

일부 군법무관이 군장성들의 투철한 군인정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총을 안 받느냐, 이런 나쁜 놈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에 영합하여 개발한 해피한 법 적용이었다. 이를 계속 유효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우습기는 마찬가지였다. 1992년 9월14일 선고한 92도 1534 대법원 판례는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도 여러 번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많은 군법무관들이 이는 너무 어색한 법 적용이라고 지적하자, 94년 아예 군형법 44조 항명죄의 최고형량을 3년으로 높였다. 그뒤로 지금까지 계속 3년형을 선고하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군 의무 복무기간은 2년6개월에서 2년2개월로 줄었는데, 집총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형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부 법무관들은 오래 전부터 현행법상 대체근무제가 없으니 여호와의 증인을 어쩔 수 없이 항명죄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군복무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군복무 대신 형벌을 받는 것이고, 교도소 생활이 군복무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징역 2년도 길다고 생각했다. 군법무관이었을 때 이같은 고민을 했지만 현실 재판에서는 기계적으로 2년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후배 군법무관들도 기계적으로 3년형을 선고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 수는 8만8천명이고, 1년에 약 500명 정도가 집총거부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있다고 한다. 20대 초반의 젊은이 1천5백명 정도가 같은 죄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양심범으로 형을 살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이렇게 무관심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독재정권시절 민주화를 주장하다가 1천5백명이 징역 3년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관심하였을까. 수형거부 등으로 여호와의 증인신자들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 사상의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탓에 여호와의 증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한다. 뿌리깊은 반공주의는 처벌을 정당화하는 또다른 배경이다.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 의원들도 나서길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양심상의 이유로 전쟁을 반대하고,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징집할 것인가, 만약 징집을 거부할 경우에 범법자로서 처벌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1, 2차 세계대전 뒤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되었다.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등 30여개국에서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전쟁거부에만 병역거부를 인정하지만, 스웨덴 등 많은 나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무기사용으로부터 일어나는 중대한 양심적 고뇌도 포함하고 있고, 독일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세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다.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근거로서 종교적 이유만이 인정되던 것이 최근에 와서 도덕적, 인도적, 정치적 동기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가 여부로 입법 정책상의 쟁점이 옮겨가고 있다.(유남석, <양심상의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 1985, 군사법연구 3집 육군본부 법무감실 발행 참조)

이제 우리도 평화를 주장하는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 정도는 인정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변화, 민주주의의 성숙, 현대전의 군 인력형태의 변화가 그 배경이다. 생각깊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간절히 기대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사상의 자유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것을 계기로 나와 이기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동료변호사 10여명은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우리들은 변호인도 없이 재판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변론할 것이다. 또한 우리 변호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평화주의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옹호하고, 항명죄 처벌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우리나라 헌법 19조 위반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하였다.

임종인/ 변호사

=====

한겨레 21 제 354호

[보도그뒤] 지금은 대체복무제 입안 전야

천정배 의원 추진 계획 밝혀... 연이은 방송 프로그램 방영, 여론 공론화 추세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입안을 추진하겠습니다.”

4월4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법사위 소속 천정배 의원(민주당)은 의원 발의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천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 문제는 헌법학을 배운 법학도라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주제”라며 “오랜 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을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되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 원칙으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하면 당론으로 채택될 것”

먼저 천 의원은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전제한 뒤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는 그 사회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재는 잣대”라고 정의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는 현상은 지난 반세기 동안 반공주의의 그늘에 가리워졌던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는 방증이란 게 그의 의견이다.

천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소수의견 보호 원칙도 언급했다. 천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소수일 수밖에 없는 집단의 문제”라며 “이젠 국민 다수가 나서서 그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감옥행을 고집해온 사람들인 만큼 사실상 국방력 손실도 없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어 천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현실적인 대체복무 시행령을 만든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종교적 양심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적, 인권적 이유의 병역거부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천 의원은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낙관하는 편이다. 천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은 쉽게 찬성할 것으로 본다”며 “일단 발의를 하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기에 대해서는 천 의원은 “4월 임시국회까지는 어렵겠지만 다음번 국회 때는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야말로 기존 헌법이 명시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문제인 만큼 ‘보수’가 앞장서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정치권에서 처음 공론화되는 시점에 맞춰 방송매체에서도 잇따라 이 주제가 다뤄졌다. <한겨레21> 창간7주년 기념호에 대만 특별취재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아요’가 나간 뒤 한국방송 <9시 뉴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뤘고, 4월1일에는 한국방송 <취재파일 4321>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집중 취재해 방송했다.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현실을 다룬 이 프로그램에 이어 4월8일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대만의 대체봉사제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네티즌도 일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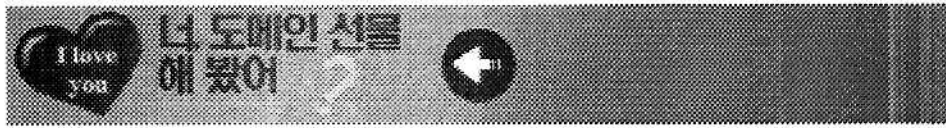
인터넷상의 토론 열기도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2월20일 ‘인터넷 한겨레’에 개설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토론방’은 아직도 하루 1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올라올 만큼 토론 열기가 뜨겁다. 두달 가까이 계속된 이 토론방에 올라온 글은 총 7천건에 이른다. ‘인터넷 한겨레’ 외에도 ‘디지털 딸’, ‘컬티즌’ 등 여러 인터넷 매체에 양심적 병역거부 기사가 실렸다.

바야흐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론의 화두를 넘어 현실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밝힌 천정배 의원은 18세기 프랑스 계몽철학자 볼테르의 말을 인용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나는 당신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의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목숨을 걸고 당신편에 서서 싸우겠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병역거부 사전 설명



네이버 홈 > 백과사전

Search bar with '검색' button

항목에서 본문에서 이미지에서

웹문서 | 웹이미지 | 영어사전 | 국어사전

병역거부 [兵 役 拒 否]

인쇄용 화면

분류

참조항목

· 사회과학 > 국방 및 군사 > 국방 및 군사일반

- 국민개병제도
- 양심적 병역거부
- 평화주의

요약

종교적 신조(信條)나 반전사상적(反戰思想的) 입장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295년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처형된 막시밀리아누스의 기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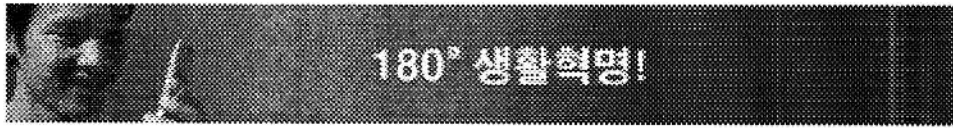
그러나 근대국가가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시행하자 양심적 병역거부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는 '역사적 평화교회'의 신도들과 사회주의자들의 투옥을 각오한 병역거부가 속출하였고 그에 대한 탄압도 혹독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몇몇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法制化)하였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10여 개 국에서는 제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점령지에서의 농업·교육·야전병원 근무 등 대체작업(代替作業)에 종사하면 전투행위를 면제하는 법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도가 없는 나라의 병역거부자는 혹독한 처벌을 각오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한때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이 그들의 교리에 어긋나는 집총(執銃)을 할 수 없다 하여 병역을 거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

▲ Top

Copyright 1997-2000 © NAVER.COM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00-2001 © EnCyber.COM All Rights Reserved.



네이버 홈 > 백과사전



검색

항목에서 본문에서 이미지에서

웹문서

웹이미지

영어사전

국어사전

양심적 병역거부 [良心的兵役拒否, conscientious objector]

인쇄용 화면

분류

· [사회과학](#) > [법](#) > [법일반](#)

참조항목

- [반전운동](#)
- [병역거부](#)
- [병역법](#)

요약

병역·집총(執統)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이것을 권리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위스·에스파냐·포르투갈·폴란드·러시아·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 Top